

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

2007. 12

운 영 위 원 회

2007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

[운영위원회]

1. 감사의 목적

-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,
-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- 2007. 11. 27 (화)

3.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

- 대상기관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제1호
 - 구의회사무국
- 사무의 범위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
 -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

4. 감사반의 편성

- 감사총괄 : 운영위원회 위원장

(가나다순)

위원장	간 사	감 사 위 원	사무보조
고기판	최미경	김기중, 김동식, 박성호, 신흥식, 윤동규, 윤준용	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기 간	감사장소	감사대상	비 고
2007. 11. 27(화) 14:00~18:00	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	영등포구의회 사무국	- 현황보고 및 청취 - 서류확인 - 개별감사

6. 감사방법

- 현황보고 및 청취
- 보충자료 제출요구
-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
-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답변

7. 감사 진행순서

- 감사실시 선언 - 위원장
- 위원장 인사
 - 적극적인 감사당부 및 성실한 수감자세 강조
- 선 서
- 국장인사
- 현황보고 :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
- 개별감사
- 공개질의답변 - 일문일답식 회의진행
- 감사결과 종합평가 및 강평
- 감사 종료 선언 : 위원장

8. 감사 자료요구 사항

○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공통사항

-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
-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
- 예산집행현황 및 비 예산사업 추진실적(2007.1.1 ~ 2007.10.31)
-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(2007.1.1 ~ 2007.10.31)
- 각종 민원(진정, 청원, 기타)접수 처리부(2007.1.1 ~ 2007.10.31)
- 기타 위원이 감사 시 요구하는 자료

나. 의원별 감사요구자료 목록 (양식 : 별첨1)

-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

○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

○ 제출기한 : 서류제출 일로부터 3일

○ 제출부수 : 15부

-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를 명기하여 제출

- 현지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 기관에서 준비

9. 주요 감사 착안 사항

대 상	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	비 고
구의회 사무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회의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· 의회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· 회의의 방청 및 참관 ·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· 물품의 수급관리 · 청원의 접수, 이송 및 처리 결과 통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황보고 청취 - 질의 및 답변 - 서류감사 - 현지 확인

10. 시정 및 저리 요구사항

-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임시회 및 정례회기시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회기중에도 끊임없이 지역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일부에서는 회기 중에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.
향후에는 회기 중에 실시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평소에도 내 고장 영등포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고 지역민의 민심 파악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기록하고 폭 넓게 홍보하여 주기 바람.
- 행정 및 사회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 부서 공통으로 예산집행 집행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공통경비 등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음.
의회사무국 예산집행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.
- 행정사무감사 시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의회 내에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자문이 필요하였으나, 의회 내 전문위원은 예산 심의 등의 이유로 실제 행정사무 감사장에 지원이 없는 실정임.
향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사무국 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
- 사무국내 소규모 공사 및 물품용역 등의 계약 업무 추진 시, 사전에 계약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과 더불어 건설하고 깨끗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.